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개인신용손해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종목의 명칭 : 개인신용손해보험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년	일시납, 2회납, 4회납, 12회납
2년, 3년	일시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1) 자동갱신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2)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회사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금액의 한도를 2억원으로 한다.

3)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2012년 4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아니함

(2012년 4월 1일 이전 자동갱신평약 첨부 계약의 갱신에 한하여 판매함)

4) 판매상품의 명칭에 관한 사항

판매상품의 명칭은 “에이스개인신용상해보험< >”으로 함.

다만, () 부분은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 등의 명칭으로 한정하며, < >부분은 자동갱신 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한하여 <갱신행>이라는 문구를 추가함.

<예시>

① 자동갱신평약 미첨부 계약 : 에이스개인신용상해보험

② 자동갱신평약 첨부 계약 : 에이스개인신용상해보험<갱신행>

- 5)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인 경우 회사의 확인 사항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대출금융기관인 경우 지급보험금 한도내
에서 피보험자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소멸됨을 확인함
- 6)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2) 기타
-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Chubb. Insured.SM